

코로나-19, 해외입국자에 대한 대응조치

2021. 9. 10 (금) 기준

* 아래 사항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중앙 방역 대책본부 홈페이지,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 출처 : <http://ncov.mohw.go.kr/>

구 분	상세내용
<p>특이사항</p>	<p>○(6.16) 6월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관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 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 - 관광 등 비필수 목적 입국 시 격리 면제 불가능 <p>○(7.1)7월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 적용 제외 -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p>○(7.4)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8개국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필리핀, 파키스탄 <p>○(7.6)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후 이동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가족 또는 지인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 -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대중교통 탑승을 제지당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또는 여권에 부착한 해외접종완료자 스티커 제시 후 탑승 요청 ※ 단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한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p>○(7.15)해외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 대한 방역지침 강화(2021.7.15. 0시 도착 항공편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변경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 당국의 조치 - PCR 음성확인서 기준 :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영유아 동반 일행 모두가 적절한 PCR 음성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 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
<p>코로나 검사 등 문의전화</p>	<p>질병관리본부 국번없이 1339 강남구 선별진료소 02-3423-5555 (재난안전대책본부) 강남구 보건소 · 주중(9시~21시) 주말·공휴일 (9시~18시) ※ 한시적 주차장 폐쇄</p> <p>강남구임시선별검사소 삼성역 6번출구(코엑스) · 주중(9시~17시) 주말·공휴일 (9시~14시) ※ 소독 12시~13시 세곡동 방죽공원 · 주중(9시~17시) 주말·공휴일 (9시~14시) ※ 소독 12시~13시 SRT 수서역 · 주중(10시~18시) 주말·공휴일 (10시~18시) ※ 소독 13시~14시 (서울시 운영)</p>

<9월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 안내>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9월)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우리 청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등을 적용(5.5~)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입국일 기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9월에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소지자도 동 국가 발 입국자는 격리면제 적용 제외

*9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 36개국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짐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공지 예정

【적용기간】

- '21. 9. 1. ~ 21. 9. 30. 입국자

【참고사항】

- 단, 유행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는 제외

(2021.08.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 안내>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를 위한 충족요건 및 절차가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8.30 입국자부터 적용)

* 8.30 이전 입국자는 8.30일 부터 지자체 관할 보건소에 확인 시 변경제도를 소급적용 가능

【주요 변경사항】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변경 (8.30일 입국자부터)

(기존)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 (변경)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입국**한 경우)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

② 진단검사 변경 (8.30일 입국자부터)

(기존, 2회)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입국 후 6~7일차

→ (변경, 3회)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 내**, 입국 후 6~7일차

-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단,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입국 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요건 미충족 시 격리면제 불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

②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④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공지사항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안내' 참고)

* 단,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입국, 체류 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경유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적용 가능(본인입증 필요),
입국 시 14일 이내에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 될 수 있음

【적용절차】

- ① **입국 시** 검역대에 **①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COOV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② PCR음성확인서(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 발급기준은 공지사항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참고)를 제출하여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를 확인**
 - ② 입국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 실시** 후 격리면제(수동감시* 전환) 가능 여부 최종 확인
- ♣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 자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입국시 설치한 자가격리앱은 ‘음성’ 확인 시 삭제하시면 됩니다.** ♣
- *수동감시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받기, 외출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격리면제(수동감시) 기간 중 방역수칙 및 중도출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 단, 요건을 충족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 전환)한 경우라도 입국 후 1일내 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실시한 PCR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
- ③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6~7일차 진단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기타 및 주의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미충족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서의 격리면제 불가 (기내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
 - **국내 1회 + 국외 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하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조건 충족 시 격리면제 가능
- * 국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가능한 자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출처: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 검역대응 절차

□ 유증상자

구분	진단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양성 음성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에는 격리면제 불가 →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무증상자

○일반적인 대응 원칙

구분	예방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 / 장기 체류 외국인	제출	제출	보건소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능동감시)	6~7,12~13일째 추가 진단검사 실시(총 2회)
		미제출	임시생활시설 (입소비용 본인부담)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능동감시)	6~7,12~13일째 추가 진단검사 실시(총 2회)
	미제출	제출	보건소	자가격리	격리해제전 검사
		미제출 *외국인 입국불허	임시생활시설	시설격리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격리해제전 검사
단기 체류 외국인	※ 세부절차 향후 마련	제출	임시생활시설	시설격리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격리해제전 검사
		미제출	입국불허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하여 출국한 '예방접종완료자'만 제출

※ 진단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해외에서 입국 시 이동안내(서울 거주자 한함)

* 출처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① 자차 이용안내

자차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 여권, 항공권 지참	진단 검사 후 바로 거주지 이동	14일간 자가격리!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필수
-----------------------	---------------------------------------	----------------------	---

② 특별수송택시 이용안내 (이용료는 자부담 6만 5천원~13만원, 구역별 정액요금, 24시간 운영)

서울택시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후 차량배차 ▶ T1은 12~13번 게이트 중간 ▶ T2은 2~3번 게이트 중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 여권, 항공권 지참 * 당일검사가 어려울 경우, 예약 후 익일검사	승객 검사 후 특별수송택시 재탑승 * 배정된 택시는 검사 종료시까지 기다립니다.	자택 이동 후 14일간 자가격리!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필수
---	---	--	--

③ 특별수송버스 이용안내 (이용료 : 16,000원)

입국 수속 후, 인천공항 T1(1층), T2(지하1층) 대합실 이동	노선확인 및 탑승 신고서 작성 ▶ 탑승신고서는 각 구청에 통보, 진단검사 및 자택 이동 등에 활용 (하차이후에 거주지 이동할 자차없는 부득이한 경우, 구청차량 요청가능)	버스탑승 및 자차구별 하차지(보건소 선별진료소) 로 이동	구청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 후 거 주지로 이동 (개인차량을 우선이용 권고 없을 경우에만 구청차량 이용)
---	---	---------------------------------------	---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2020.12.10부터 시행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구 분	내 용
도입목적	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신고 시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정보 발령 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신고의무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숙박업자의 신고의무	외국인이 숙박할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방법	숙박업자는 2021년 상반기 중 별도 숙박신고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별지 서식에 맞춘 투숙 외국인 정보를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해 관할지방 출입국·외국인고나서에 신고

*경보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무는 체류 외국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 관광 도심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자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